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정 세 욱

명지대 교수,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

1. 서 론

‘지방의 시대’는 20세기말에 이미 도래했다. 대외적으로는 WTO체제의 출범으로 지구 전체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지구촌 시대를 열었고, 정보화와 더불어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시대(The era of borderless competition)’에 진입했으며, 국내적으로는 ‘91년의 지방의회 구성과 ’95년의 ‘6.27 지방선거’에 의한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으로 ‘지방의 시대’를 열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지역경제의 근간인 산업정책 개발 및 수렴기능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넘어옴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각 자치단체의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자치단체들은 강한 열의와 의욕을 가지고 지역경제를 진흥시키는데 주력하게 되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특화산업을 육성하려는 노력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울이느냐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성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Prats, 1973: 87-91, 107-115). 과거 지역특화산업은 구(舊)내무부가 지방의 전통적 생산품 중에서 ‘1지역 1명품’으로 지정한 품목으로서 대부분 농수산물이었으므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상 미미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산업으로까지 지역특화산업을 확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개발도상국 단계를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위주의 선진국형으로 변모했고, 둘째, 각 자치단체에서 명성을 얻은 농수산물의 육성도 필요하지만, 지금부터는 모든 산업을 총망라하여 비교우위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가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한 다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이 얼마만한 역할을 담당하는가를 살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

재정 : 이론적 논의

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정세욱, 1997: 544-546).

첫째, 지역간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과밀·과소지역문제를 해결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면 지역별 경제활동을 진흥시켜야 한다. 지역경제의 발전없이 국토의 균형성장을 이룰 수 없다.

둘째,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 인구의 사회적 이동(social mobilization)은 경제의 저수준지역에서 고수준지역으로 일어나므로 지방에 인구를 정착시키는 기본조건은 지역경제의 진흥이다. 취업 기회와 소득원을 제공하는 산업기반을 마련하지 않고는 인구의 흡인 내지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서울 등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을 방지하려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인구의 지방정착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전 국토의 기능적 공간체계를 안정화하고 전체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이론상 공간체계는 물리적 시설, 경제·사회적 기능 및 지역간 상호작용관계에서 안정된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그 질서가 깨지거나 잘못되면 국토공간체

계는 혼란·무질서·비능률을 초래하게 된다. 산업입지가 일부지역으로 편중(偏重)되고 많은 지역의 경제활동이 허약해지면, 공간체계가 왜곡되어 전 국토에서 슬한 역기능과 문제점이 발생한다.

넷째, 지역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필요하다. 각 지역이 보유하는 자연자원과 인적자원의 개발·활용은 지역경제의 발전과 직결되어 있으며 상호 촉진관계를 가진다.

다섯째,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하다. 지역경제의 발전은 재화의 생산과 유통을 신속하게 하는 동력·교통·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을 확충시키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킨다.

여섯째, 세계화·지방화가 진전됨에 따라 국가간의 경쟁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세계화(globalization)로 인하여 국경의 개념이 퇴색하고 지구가 단일시장이 되면서 지방의 구석까지 경쟁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이제는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발전의 책무를 지고 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지역의 창의성과 능력을 극대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나. 지방자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경제주체인 기업의 활동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치·행정적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정치 환경의 변화는 기업에게 새로운 변수로 작용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실시가 어느 부문에,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를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지역경제에 관한 모든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장악하여 행사할 때에는 확일적으로 정책을 결정·집행하게 되므로, 어느 지역의 특성도 살리지 못하여 결국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모든 지역이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에도 중앙집권체제를 고수하면 어느 지역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으며, 결국 다른 나라의 상품시장으로 전락하고 만다(정세욱, 1997: 536-538). 지방화란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응능력 저하에 따른 정치체제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지방정부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방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된다(Kingdom, 1991: 503-504). 지방자치를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진흥에 관한 모든 결정·집행권을 행사하면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들이 그 지역의 지정학적 이점, 부존자원,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특화산업을 육성·지원하려 할 것이므로 지역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Winter, 1981: 275-286). 지역특화산업이란 특정지역에서 발생시기가 오래된 전통산업으로서의 역사성(歷史性), 동일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지역적인 기업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산지성(產地性),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하지 않거나

또는 타 지역 보다 경쟁력이 높은 특산성(特産性), 그 지역의 부존자원(원료, 자본, 인력,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역외로 판매하는 탈지역성(脫地域性)의 산업으로서 지역경제 여건에 비추어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비교우위가 높은 산업을 의미한다.

지방화가 진전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Fernández *et al.*, 1983: 25-28).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면 자치단체의 세입이 증가하므로 지방자치는 더욱 발전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는 ‘동전(銅錢)의 양면’에 비유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 의존적인 소극적 산업지원정책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실시가 지역경제와 기업활동에 미치는 순기능은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 주(州) 및 지방공무원, 지역주민(The people as legislators)들의 정책선호, 중앙정부의 지원정도에 따라 좌우된다(Winter, 1981: 187-313).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가 모든 기업들에게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규모나 성격(예컨대, 수출기업인가, 내수기업인가), 활동영역(예컨대, 전국적 기업인가, 역내기업인가)에 따라 그 영향은 다르다. 예컨대 전국적 규모의 대기업이나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지만, 역내기업이나 공해유발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커질 것이다.

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역할

외국기업의 직접투자와 역외기업을 그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는 직접재정지원과 간접재정지원이 있다. 직접재정지원으로는 보조금·지방세감면·금융지원 등이 있고, 간접재정지원으로는 기업이 창업을 하고 운영함에 있어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지원, 즉 지역노동시장 보조와 부지(敷地)지원이 있다.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보조는 기능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와 기업인을 연계시켜주는 것이며, 부지지원은 우리 나라처럼 외국인전용공단을 지정해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이세구 외 2인, 1997: 114-115). 재정지원정책은 임금·토지가격 등이 경쟁국보다 높거나 대도시보다 불리하여 경쟁력이 떨어질 경우 직·간접 보조를 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Prats, 1973: 112-115), 역외기업 또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노력할 때에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통하여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얼마나 활력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가,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갖춘 지역기업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가에 따라 지역경제의 진흥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자치단체와 기업유치경쟁을 벌임에 있어 그 지역이 기업 또는 공장의 입지지역으로서 비

교우위를 갖도록 지방재정을 운용한다(Massenet, 1983: 83-87).

첫째, 지방세감면 등의 조치로 기업을 유치한다. 지방세감면에는 직접적인 감면과 국세감면에 따르는 국세부가세로서의 지방세(우리 나라의 주민세 소득할)의 감면의 두가지가 있다. 지방중소기업의 창업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므로 창업자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창업투자기관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창업투자기관 설립에 나서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의 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방건설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특히 대도시, 공항·수출입항과의 연계교통망체계를 갖추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요건이다. 문제는 방안이 없는게 아니라 돈을 들이지 않으면서 획기적인 개선책을 찾으려는데 있다. 다만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하철건설에서 보듯이 개발프로젝트가 대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방재정으로 소요자원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사업들이 늘고 있다. 오늘날 고속전철, 각종 순환도로, 항만시설, 간척지사업, 공항 등 陸·海·空에 걸쳐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경제의 진흥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하지만 정보통신의 인프라인 고속정보통신망구축사업은 앞으로 국토의 모습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도시개발프로젝트, 도심재개발사업도 대형화하고 있다. 신(新)교통축과 함께 개발되는 신도시·신개발지의 중

요성은 커지고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방재정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에 기여하고,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육성기금을 운용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하고 지역특화산업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입지조건, 부존자원, 인적자원, 토양, 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고 지방특화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며 각 지역별로 산업을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운용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민영화(privatization), 내부시장화(內部市場化)를 통한 외부계약(contracting-out)을 촉진시킬 것이며, 지방기업의 유인구조가 될 것이다. 자치단체는 재정투·융자활동의 확대에 따른 부족재원조달의 한 방편으로 민자유치노력을 기울일 것이므로 지방기업에게 활동영역을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공공서비스의 생산전달과정에서 민간기업의 역할을 크게 확대시킬 것이다.

다섯째, 자치단체는 지방기업의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지원기반을 체계화해야 한다. 산업지원기반은 중소기업지원의 중심지로서 기업의 경쟁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교두보 및 교류연계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교류기능, 연구개발기능, 창업보육(創業保育)기능, 생산기능 등을 갖추어야 한다.¹⁾ 교류기능은 일방적

인 지원방식을 피하고, 산업지원기반과 중소기업간 및 중소기업 상호간의 파트너십 형성이라는 개념 하에 상호 상승작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경영지원, 정보지원, 기술지원, 교육·훈련, 전시판매기능이 포함된다. 이 4개의 산업지원기반 기능의 조합 방식의 대표적인 예로 중소기업진흥센터, 벤처빌딩 등을 들 수 있다(신창호 외, 1997: ii-v, 65-105, 107-137).

선진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한 사례가 많다. 일본을 보면 神戸市는 민·관 합동방식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인공해상도시인 포트 아일랜드(Port Island)와 로꼬 아일랜드를 건설하였고, 스쿠바市는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아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를 크게 진흥시켰다. 大分縣은 지역특화산업인 일촌일품(一村一品)운동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농촌 자치단체 중에는 작은 것이라도 그 고장의 특화산업을 진흥시키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결정적 역할을 한 예가 적지 않다. '62년에 大分縣 大山村의 민선촌장이 “매실나무와 밤나무를 심어 하와이로 여행가자”는 슬로

1) 1960년대 미국의 리서치 파크(Research Park), 1970년대 영국의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 1980년대 일본의 테크노폴리스(Technopolis), 1980년대 독일의 기술혁신센터(Technology Innovation Center), 사이언스 시티(Science City) 등의 설치목적은 기술혁신과 산업화를 지원하려는데 있었다.

일본 과학기술청 과학기술정책연구소(1996), 「新しい産業創造據點を目指して」, 東京: pp. 19-23.

건을 내걸고 시작한 NPC(New Plum and Chestnut)운동이 그러했고, '82년에 富山縣 利賀村이 '利賀村에 와서 세계와 만난다'는 슬로건 하에 「利賀페스티벌 '82-토야마 세계연극제」를 2주동안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문화촌 구상이 그러했다.

지역경제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각 자치단체가 얼마나 적절히 재정적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지역경제발전의 격차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지방재정이야 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간주되고 있다.

3. 지역특화산업의 변화추이

가. 전통산업에서 IT산업으로

과거 우리 나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한 과제는 다양했다(<표 1> 참조). 이러한 종래의 과제는 1차산업 위주로 선정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그 경제성과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과거 정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시행해 왔지만 그 효과가 미미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나라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해 왔다.

- (1) 켓치프레이스 : 지역이미지 향상(CI-RI)
- (2) 상징 : 탐, 음악당, 박물관, 컨벤션센터 등
- (3) 중심지역 이벤트 추진
 - : 지방문화행사, 활성화 중핵지역의 설정(중심지역 토지이용계획)
 - : 농촌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의 개최
 - : 지역활성화 추진주체의 육성 및 네트

<표-1> 지역산업활성화의 과제

지역산업 활성화부문·항목		과	제
농 림 수 산 업	농업	-자립경영, 기업적 경영 -농업생산·판매 -생산조직, 기계화·시설 -토지이용계획 -기반정비	-기술혁신·경영혁신. -지역농업의 생산·판매혁신과 지속가능성. 고부가가치농산물의 재배·진흥. 지역특산물(1郡1品)의 육성과 유통현대화 -농업생산조직, 취약영농조직, 제3섹터, 공사 -농지이용의 극대화, 집단적 토지이용 -中山間 농지정비, 山村취락 농업기반조성
	임업		조림·間伐, 林道정비, 森林보전, 삼림문화
	수산업		양식어업, 어업환경의 보존
1 차 산 업(가 공)		농림수산가공(지역특산물·자원활용), 전통산업	
상·공업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상권(商圈)의 활성화	
서비스·관광·농촌형 리조트		농업·자연·역사·스포츠인·조직과의 연계 (도시와 농림의 교류·관광농원·시민농원)	

워크화

(4) 지도자: 지역활성화를 위한 리더의
발굴 및 연수

그러나 '90년대 중반부터는 다른 지역에 없거나 또는 지정확상으로 타 지역에 비해 경쟁력이 높은 산업 및 지역경제여건에 비추어 잠재적으로 비교우위가 높은 첨단기술산업 중심으로 재편하기 시작했다. 특히 IT(정보기술)·생명공학·문화산업 등 첨단업종에 속하는 기업들 중에 초고속성장을 하는 것이 생겨나고 있다. 이른바 지역 특화산업이 달라지고 있으며, '굴뚝산업'에서도 최고경영자의 꾸준한 혁신노력으로 경쟁력을 키워온 기업들은 '제2의 도약'을 위해 부심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00년도 말에 전국 25개 공단에 대한 산업구조 첨단화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르면 조립금속·섬유·의복·목재·종이 등 전통산업 중심이었던 구로 공단은 산업구조 재편 후 전자정보기기·

통신기기·정밀기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바뀐다. 국내 최대의 섬유단지중 하나인 구미공단은 디지털 가전단지, 기계공업단지인 창원은 항공우주산업 및 첨단기계지역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또한 광주공업단지는 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광(光)산업 쪽으로, 인천 남동공업단지는 조립금속·목재 종이 등에서 첨단부품 및 미디어산업단지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표 2> 참조). 공단 내에 IT업체를 집중적으로 입주시키겠다는 것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각 공단 내에 벤처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벤처센터, 테크노 파크, 아파트형 공장, 창업보육센터 등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2007년까지 총 1,96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http://www.gongdan.net/record/body_skill.htm). 이와 같이 지역특화산업을 재편하려는 이유는 세계경제구조가 IT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바뀌고 있으나,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내공단은

<표 2> 산업단지별 산업구조 첨단화 추진방향

단 지	기존 주력업종	향후 주력업종
구로	조립금속, 섬유의복, 목재종이	전자정보기기, 통신기기, 정밀기기
부평, 주안	기계, 전기전자	전자정보기기, 통신기기
남동	조립금속, 목재종이	정밀기기, 신소재, 메커트로닉스
북평	음식료, 철강기계, 석유화학	정밀기기, 해양산업
반월	기계, 전기전자, 섬유의복	전자정보기기, 메커트로닉스, 환경산업
시화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메커트로닉스, 정밀기기, 환경산업
천안 외국인	기계, 석유화학	정밀기기, 정밀화학
아산	철강, 비금속	카일렉트로닉스
구미	섬유의복, 전기전자, 기계	디지털가전산업, 신소재
창원	기계	메커트로닉스, 항공우주산업
울산, 온산	기계, 석유화학, 운송장비	정미화학, 카일렉트로닉스

http://www.gongdan.net/record/body_skill.htm

아직도 이런 변화추세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통산업으로는 세계경제를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도 산업구조 첨단화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지난 '99년 12월에 87.2%였던 국가공단 가동률은 2001년 1월에는 81.5%로 낮아졌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국가공단 첨단화 방안 중에서 핵심적인 사업의 하나는 인터넷을 통해 공단 내 각 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디지털 산업단지화'이다. 그것은 공단 내에 포털(관문) 사이트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지방대학·지방벤처센터·통신사업자 등 여러 기관을 인터넷으로 연결하여 공단 내의 인적·물적자원을 통합하고, 원자재 공동구매에서부터 산·학·연 합동연구 및 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나. 대구시의 예

대구시는 수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95년 12월에 내의·양말, 우산·양산, 안경(테), 섬유기계, 자동차부품, 알미늄기물류, 목공예, 자전거(부품), 장갑 등 9개 품목을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하여 육성해왔다. 그 후 국내외 경제여건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2년간의 지원성과분석, 신규유망업종발굴을 통해 특화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대구시는 기존품목들을 계속 지원·육성하는 한편, 신규유망업종은 지역특화성, 전국대비 점유율, 성장성 및 대외 상징

성과 더불어 공동브랜드 'CHIMERIC' 참여가능성을 감안하여 선정하기로 '98년 3월에 활성화방향을 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특화품목을 안경(테), 자동차부품, 우산·양산, 알미늄기물류, 목공예, 자전거(부품), 섬유기계, 섬유제품(내의·양말, 매직글로브, 손수건(머플러, 스카프 포함), 침장류, 스포츠의류)의 8개로 조정했다(<http://www.metro.taegu.kr/cmr/special02.htm>).

4. 지방세 감면

가. 지방세법에 의한 감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지방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이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하고(법 제274조 ①항), 대도시안에 등기되어 있는 법인이 대도시 외로 이전할 때 이전에 따른 법인등기 및 부동산등기의 등록세를 면제하며(법 제274조 ②항),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자가 이를 폐쇄하고 공장설치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거나(법 제275조 ①항),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하는 것 (법 제277조 ①항)이 그 예이다.

1) 지방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는 5년간 50/100을 경감(법 제276조 ①항).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면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감면한다(법 제276조 ②항).

(가)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에 공장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나) 단지 안에서 신축·증축한 공장용 건축물 등 →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경감.

(다) 단지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

(라) 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 → 5년간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산업기술단지 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산업기술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법 제276조 ③항).

(4)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고시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법 제277조 ②항).

(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숙박시설 포함)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토지와 건축물 → 취득세·등록세의 50/100을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법 제278조 ①항).

(6)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4조 1호~8호)에 의한 사업에, (재)산재의료관리원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직업재활사업·의료사업·재활사업·근로자복지와 휴양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그 외의 부동산 →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법 제278조 ③항).

(7) 한국산업안전공단인 한국산업안전공단법(제6조 2호 및 10호)에 의한 사업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제6조 1호)에 의한 사업에 각각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법 제278조 ⑤항).

(8)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제23조 ①항 2호)상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의 50/100을 경감(법 제279조).

(9)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법 제280조 ①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이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동조 ⑦항).

(10)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포함)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지원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중소기업종합유통시설용 부동산과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양성을 위해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의 50/100을 경감(법 제280조 ②항).

(11) 중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5조 ②항)상의 확인을 받은 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 집적시설,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않음(법 제280조 ③항).

(12)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법 제280조 ④항).

(13) 유통단지 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법 제280조 ⑤항).

(14)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가스관 → 취득세·재산세 면제(법 제281조 ①항).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가스관 → 취득세 면제. 재산세의 50/100을 경감(법 제281조 ②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이 경감률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15)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법 제282조).

(16) 법인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합병에 따르는 법인등기와 합병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재산에 관한 등기 → 등록세 면제(법 제283조 ①항).

(17)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이 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출자한 건설업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법 제282조 ②항).

2) 농·어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1) 2년 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해온 자 또는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와 농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양잠·버섯재배용 건축물, 축사, 고정식온실,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창고(저온·상온 및 농기계보관용창고)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 취득세의 50/100을 경감(법 제261조).

(2) 농업용에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기계류 →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20톤 미만의 소형어선 → 취득세·등록세·재산세·공동시설세 면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시설 → 취득세 면제(법 제262조).

(3) 농업생산기반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 → 취득세·등록세 면제.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교환·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또는 임업후계자가 직접 임업을 하기 위해 교환·분합하는 임야 →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법 제263조).

(4) 농협조합, 수협조합(어촌계 포함)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받는 담보물과 농업기반공사가 농민에게 농지관리기금을 융자할 때 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 임차하는 토지의 등기 → 등록세 면제(법 제264조).

(5)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70조)가 농수산물종합직판장 등의 농수산물유통시설과 교육훈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의 50/100을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 농협중앙회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의 50/100을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법 제265조).

(6)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이 취득하는 회원의 교육·지도·지원사업과 공동이용시설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경감. 신용사업용 부동산 → 취득세와 등록세의 25/100을 경감. 농협·수협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 면제.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종합토지세 면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영어조합법인이 영농·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등록세의 50/100을 경감. 과세기준일 현재 이 용도에 사용하는 부동산 → 재산세·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 그 법인의 설립등기 → 등록세 면제(법 제266조).

(7)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어업인 후계자가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어선 → 취득세·등록세의 50/100을 경감.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

권 → 취득세 면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 사업소세 면제(법 제267조).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방세의 감면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소득세할(소득세액의 10/100), 법인세할(법인세액의 10/100), 농지세할(농지세액의 10/100) 모두 국세부과액의 10%이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내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조세특례제도를 두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줄 때에는 주민세 소득할도 그 10%가 감소되며 지방재정수입은 줄어든다. 조세특례제한법은 다음의 조세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1) 대도시 외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

(1) 대도시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100을 감면, 또는 과세이연(課稅移延)을 받음(제60조).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발생하는 양도소득 → 특별부가세의 50/100을 감면(제61조).

(2) 대도시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때 → 투자금액의 10/100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수도권 안에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주사무소 건물을 취득한 때 → 건물취득가

액의 10/100분을 법인세에서 공제(제62조).

(3) 수도권 안에 공장시설과 주사무소를 가진 중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한 때 이전 후에 발생하는 소득 → 3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면제. 다음 5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을 감면(제63조).

(4)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 임시특별세액감면으로 법인세·특별부가세 감면(제63조의2).

(5)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제64조).

(6) 영농조합법인 → 농지소득 전액과 그 외의 소득 중 일정한 범위 안에서 법인세 면제.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법(草地法)에 의한 초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 → 양도소득세 면제(제66조).

(7) 영어조합법인(營漁組合法人) →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 소득세 면제. 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 →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5/100로 하고 소득세법(제14조 ④항)을 적용하지 않음. 어업인이 어업용 토지 등을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 → 양도소득세 면제(제67조).

(8)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득 → 법인세 면제. 농지소득 외의 소득 → 법인세 감면.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草地)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소득 → 양도소득세 면제(제68조).

(9) 농지소재지 거주자 또는 영농조합법

인이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자경농지(自耕農地)의 양도소득 →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제69조).

2)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損金)에 산입(제4조).

(2) 중소기업투자금액의 3/10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제5조).

(3) 창업(創業)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²⁾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을 감면(제6조).

(4)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비율을 감면(제7조).

3)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감면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損金)에 산입(제9조).

(2) 연구인력개발비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세액공제를 받음(제10조).

(3)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금액의 5/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제11조).

(4)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을 감면(제12조).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제13조).

2) 벤처기업과 벤처산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문헌을 참조할 것.

한영주·성홍모 외 2인(1997), 「서울 벤처산업 활성화방안」, 시정연 97-R-2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 7-15, 17-75.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면 과세특례로서 소득세법(제14조, 제94조)을 적용하지 않음(제14조).

(7)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를 5년간 면제(제18조).

4)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감면

(1)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의 5/10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제24조).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10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제25조).

(3)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법인이 투자준비금을 손금(損金)으로 계상하면 사회간접자본 투자액의 8/100 안에서 손금에 산입(제28조).

5)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1) 다음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①항 4호) →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각각 감면(법 제121조의2 ①항).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增資)하는 경우에도 그러함.

(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나)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다)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2)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

<표 3>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의 비교

구분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창업·경영개선 및 시장재개발)
지원자금	지방비, 금융기관자금	국비+ 지방비(매칭펀드방식)
금 리	연 4~7.5% ※이차(利差)보전지원(연 2%이상)	연 7.5%(변동금리)
용자기금	3년(1년거치 2년상환)	8년(3년거치 5년상환)
용자한도	2~5억원	11억원
용자대상	시·도에서 선정한 유망중소기업	창업, 자동화·정보화, 기술개발, 시설현대화 사업 등
용자절차	시·도 공고 → 시·군 신청 → 시·도 추천 → 시·도심 의 → 은행통보	운전자금과 유사. 다만, 시·도에 직접 신청한다는 점이 다름

출처: (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국(2001), 「지방재정세제현황」, 2001. 3 현재, 서울, p. 134에서 인용.

기 위해 취득·보유하는 재산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세액을 감면,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비율·공제비율을 높인 때 → 그 기간과 비율에 의함(법 제121조의2 ④항).

- (가)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감면대상세액 전액을, 그 후 3년간은 감면대상세액의 50/100을 감면.
- (나)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간은 공제대상금액 전액을, 그 후 3년간은 공제대상금액의 50/100을 공제.

(3)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를 감면 또는 공제.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 → 그 기간과 비율에 의함(법 제121조의2 ⑤항).

(4)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 →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년 동안 면제(제121조의6 ①항).

6) 기타의 조세감면

그밖에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제101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100 세액감면(제102조),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제104조의2) 등이 있다.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가.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중소기업육성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

중소기업육성 관련기금을 설치하거나 또는 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 1호). 이 규정에 의한 2000년도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실적은 17,358업체에 3조3,449억원이었으며, 금리는 6~8%였다. 2001년도 자금지원계획은 운전자금(경영안정자금) 2조8,266억원, 구조조정자금(창업 및 경영개선사업자금) 1조2,694억원으로서 합계 4조960억원에 달한다(지방재정세계국, 2001: 134). 육성자금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 : 대구시의 사례

첫째, 대구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우위에 있는 특화품목을 중점 육성하여 지역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특화산업이 의존하고 있는 전통기술과 첨단산업기술을 접합시키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대구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참여범위를 확대했으며,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98년 4월에 지역특화업종을 8개품목으로 확대하고 산업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한계기업의 전업·퇴출, 유망산업의 창업증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특정업종의 침체가 지역경제에 주는 충격을 완화시켰다. 기업의 자금흐름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기업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특화산업자금 융자지원(규모: 60억원, 연리 6.55%),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 지원(규모: 700억원,

대상사업 : 대구시내에 사업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 중 제조업·건설업·유통업·운수업·통신업·통신판매업·관광호텔업)이 그 예이다.

둘째,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시장개척활동을 지원하였다.

셋째, 중진공연수원 외 8개기관에서 실시하는 기술연수비용의 50%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를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넷째, 우수공예품 출품업체(약 8개업체)를 발굴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생산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지역특화산업의 OEM 수출방식을 탈피하고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96년 12월에 확정된 공동브랜드 CHIMERIC(예비 GOLD ROCK)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참여품목은 13개이며, 참여업체 수는 14개업체(품목당 1~3개업체)이다. 국내('96. 12)와 해외('97. 5~'98. 5)에 상표등록을 했는데, 상표출원국은 미국·영국·독일·일본·홍콩·중국·캐나다·이태리·프랑스·사우디아라비아·UAE의 11개국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TV특집방송(4회), 이벤트행사 홍보(13회), 언론사 기획보도 및 홍보물 배부(5회 10,000부), 해외홍보(유명전시회 등 14회) 등 공동브랜드 홍보활동을 강화했고, 지역백화점 및 대형할인점에 전문판매장을 개설하여 마케팅 지원을 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소요액의 10.9%는 기업이 부담하고, 87.2%는 대구시가 부담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자원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정부재정	지방재정	은행자금	기업채부담	기 타
공동브랜드 육성	367(100.0)	-	320(87.2)	-	40(10.9)	7(1.9)

※ 자료 : 대구광역시 중소기업과 <http://www.metro.taegu.kr/economic/info/month/9801/index2.htm>

우수공예품 개발을 촉진하고 상품의 다양화고급화를 유도하여 판로를 개척하며 수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는 생산장려금을 지원하고 공예품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작에게는 시상금(12백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2002년 월드컵에 즈음하여 대구를 찾을 외국인과 관광객들에게 대구 특산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대구관광정보센터」와 협력하여 「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장하여 우수한 민속공예품 판로를 개척하고, 대구시 공동브랜드 「쉬메릭」을 함께 전시·판매할 계획이다.

여섯째, 지역경제촉진조례를 제정하고 2002년까지 지역경제안정기금 50억원을 조성하여 기업경영 및 경제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6. 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를 위한 지방재정지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지역의 생산유발과 고용창출에 큰 효과를 낳는다.³⁾

3) 지난 5월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98년을 기준으로 건설부문 중 SOC투자의 생산유발계수는 1.891, 수입유발계수는 0.131로서 1조원을 투입했을 때 3만1,066명의 고용효과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SOC에 1조원 투자를

올해 SOC예산 14조968억원이 모두 집행되면 생산은 26조6,563억원, 부가가치는 12조 2,549억원, 수입은 1조8,419억원의 효과가 각각 유발되고 고용창출효과는 건설 및 다른 업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모두 43만7,937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국은행, 2001. 5). 그러나 1997년 3월21일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사회간접자본은 46개국 중에서 36위를 차지하여 대만(30위), 체코(33위), 터키(34위)보다도 낮았다(<http://user.chollian.net/~soe1/간접자본1.htm>). 더구나 대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극히 부족하여 전 국토의 균형개발이란 규범론적 관점에서 지역

하면 건설업종과 다른 업종에서 모두 1조8,910억원의 생산효과를 내고, 1,310억원의 수입을 유발한다는 뜻이다. SOC투자의 생산유발계수는 수송장비 업종(2.08)보다 낮지만 수송장비의 수입유발계수가 0.31인 점을 감안하면 SOC투자가 국내총생산(GDP) 증대에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 또한 SOC분야에 10억원을 투입하면 고용창출효과는 31명으로 서비스업종인 음식점 및 숙박업종(175명)보다는 작으나, 가구 및 기타제조업(24명), 정밀기기(22명), 일반기계(19명) 등 제조업종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2001. 5),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서울.

국민일보, 2001. 05. 14. 손영옥, yosohn@kmib.co.kr

간의 균형적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교통시설을 예로 들어보자. 현재 도로·철도·항공·해운 중에서 수송수요를 충족시키는 교통수단은 하나도 없다. 미국 LA에서 부산까지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배로 운송하는데 드는 운임은 127만5,000원인데, 부산에서 서울까지의 운임은 144만9,000원에 달한다(<http://www.logistics21.com>). 제조업의 매출에서 물류비(物流費)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로서 일본의 11%, 미국의 7%에 비하여 1.5~2.5배나 된다. 단 1센트라도 싸게 공급해야 하는 무한경쟁시대에 이처럼 높은 물류비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 푼이라도 가격을 낮추어야 기업도 살고 나라도 살아남는 상황이니 만큼, 높은 물류비를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97년까지 총연장 1,885km의 고속도로를 건설했다. 오는 2004년까지는 동서축 9개, 남북축 7개로 연결되는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건설하고, 국도는 총 500km를 연장할 계획이다. 이것이 실현되면 전국이 반일생활권으로 좁혀져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물류난이 심각하여 2004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결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경제문제와 교통·환경문제를 꼽은 것이 이런 심각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각 지역별 거점도시에 물류 및 유통단지

를 조성하면 교통량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물류단지의 조성을 촉진하려면 유통단지개발사업용 토지의 수용조건을 완화하고, 부동산취득에 대한 세금감면 및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유통단지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도로·철도,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등 제조업수준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단지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재산세·종합토지세를 공업단지 수준으로 감면해야 한다. 물류단지에 철도를 연결하여 공로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21세기 우리나라의 교통·물류문제의 해결여부는 앞으로 10년간의 투자에 달려 있다.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고 균형있는 지역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21세기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야 할 1차적 과제이다. 그러나 교통·물류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은 자본집약적(capital intensive)이므로 이를 확충하는 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막대한 재정부담을 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부족하여 감당하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정된 가용재원으로 투자를 하려면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7. 맺는 말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각 지역의 지정학

적 여건과 부존자원, 잠재력을 살려 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계획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한다. 이 기능을 중앙정부가 관장하면 전 지역의 경제문제를 중앙의 시각에서 획일적으로 결정·처리하게 되므로 어느 지역의 특성도 살리지 못하고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정치후진국들이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Lemelin & Polèse, 1995: 33-36; Blary & Pilette, 1995: 186-188).

각 자치단체는 산업적 인센티브 및 고용 창출과 같은 분야에서 정책 이니셔티브(Policy Initiatives)를 쥐고 지방경제의 진흥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Kingdom, 1991: 503-504), 치열한 기업유치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공장의 입지지역으로서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해 지방세감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등 기업유인체계를 갖출 것이다. 또한 지역경제의 하부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할 것이며, 이는 지방건설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자치단체는 지역별 부존자원, 인적자원, 토양 등에 가장 적합한 업종을 선정하여 지방특화산업을 육성할 것이다. 한편 산업구조의 개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IT산업지향적 지역특화전략을 추진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다. 그리하여 각 지역별로 산업이 차별화될 것이다.

교통투자는 지역간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면서 지역간의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공간배치를 해야 한다. 지역별로 주요도시에 물류 및 유통단지를 설치하여 서울에의 의존도를 줄이면 교통과 물류문제가 크게 개선될 것이며,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기반구축, 행정규제철폐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보다 유리한 기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기업의 역내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특히 IMF와의 협약으로 중앙정부의 재정투자확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투자를 늘려 민간투자의 부족을 보완하는 이른바 ‘지방재정의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문헌

- 신창호 외 2인(1997), 「서울시 산업지원기반 구축방안」, 시정연 97-R-23,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세구 외 2인(1997),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방안」, 시정연 97-R-2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정세욱(1997), 「한국지방자치의 과제」, 서울: 법문사.
- 한영주·성흥모 외 2인(1997), 「서울 벤처산업 활성화방안」, 시정연 97-R-24,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한국은행(2001. 5),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서울: 한국은행.
- 국민일보, 2001. 05. 14, 손영욱, yosohn@kmib.co.kr
- (행정자치부)지방재정세제국(2001), 「지방재정세제현황」, 2001. 3 현재, 서울: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
- Blary, Réjane & Danielle Pilette(1995), “Habitat abidjanais informel : production, financement et gestion,” in Mario Polèse & Jeanne M. Wolfe[eds.], *L'Urbanisation des Pays en Développement*, Paris: Economica.
- Fernández, Armando López *et al.*(1983), “Une approche globale : le cas du Mexique,” in Gérard Timsit *et al.*, *Le nouvel ordre économique international et l'administration publique*, Paris: Unesco.
- Kingdom, John(1991), *Government and Politics in Britain*, Cambridge, UK: Polity Press.
- Lemelin, André & Mario Polèse(1995), “Développement économique, urbanisation et concentration urbaine : essai de synthèse,” in Mario Polèse & Jeanne M. Wolfe[eds.], *op. cit.*
- Massenet, Violaine(1983), “Des approches sectorielles : le cas de l'administration française des relations extérieures,” in Gérard Timsit *et*

al., op. cit.

Prats, Yves(1973), *Décentralisation et Développement*, Bibliothèque de l'I.I.A.P., Paris: Éditions Cujas.

Winter, William O.(1981),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a Decentralized Republic*,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http://user.chollian.net/~soe1/간접자본1.htm>

http://www.gongdan.net/record/body_skill.htm

<http://www.logistics21.com>

<http://www.metro.taegu.kr/cmr/special02.htm>

<http://www.metro.taegu.kr/cmr/special02.htm>

